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7
----------	-----

제출년월일 : 1999.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 정 이 유

- '99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 및 폐기물처리비용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거 2003년까지 점진적으로 봉투수수료 자립도 100% 현실화 추진으로 금년도 봉투 수수료 자립도 20% 및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원가보상을 60%를 적용하여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재조정하고
-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통한 경영혁신과제로 선정되어 추진중인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업무 위탁을 추진하며
-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시민 모두가 환경오염 감시자가 됨으로써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근절하고
- 현재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된 쓰레기봉투를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생분괴성 봉투를 제작 보급하여 수도권매립지 지반의 조기안정화를 도모함은 물론
- '99. 8. 6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처리하여야 하는 1일 300kg미만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과 주택·상가 등 보수공사시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거·처리로 주민 편의행정을 도모하고
-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 공급을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시설도 확대·공급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 포상금제 실시(안 제5조의 2)

-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 활성화

나. 가내공업용·건설폐기물용 봉투 및 생분괴성 봉투 제작(안 제6조, 제7조)

- 가내공업용 봉투는 적색, 건설폐기물용 봉투는 황색으로 제작
-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진분)를 30%이상 섞이 제작

다. 공무원 현금 취급 방지를 위한 읍면동사무소 쓰레기봉투 판매 제외(안 제8조)

라. 쓰레기봉투 판매업무 위탁 실시(안 제 8조의2)

- 읍·면·동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추고 쓰레기봉투 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한 금융기관 및 파주시시설관리공단

마.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및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변경(안 제9조)

- 쓰레기봉투 가격을 평균 26.2% 인상
- 가내공업용봉투가격은 3,000원(100ℓ), 건설폐기물용봉투 가격은 2,500원(50ℓ)으로 정함
- 대형폐기물 34개 품목중 21개 품목 수거 수수료 인상

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감면 실시(안 제14조)

-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포상금지급) ①시장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의 신고방법, 포상금의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사업장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를,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사업장용쓰레기봉투의 색깔은 가내공업용은 적색, 건설폐기물용은 황색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옅은 청색으로 하며,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사용 용도별 구분 및 글씨의 색깔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공공용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 수지는 생분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업장용봉투중 가내공업용은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고 건설폐기물용은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④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3과 같다.

제7조중 제목 “쓰레기봉투의 제작등”을 “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파주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쓰레기실명제 기재란, 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분해성수지가 함유된 봉투는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7조제5항중 별표4-5 다음에 “별표4-6, 별표4-7”을 추가한다.

제8조제1항중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는 읍·면·동사무소 및 일반상가 등에서”를 “일반용봉투, 사업장용쓰레기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는 일반상가 등에서”로 한다.

제8조의2(쓰레기봉투의 판매업무 위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다음 각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파주시재무회계규칙 제99조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쓰레기봉투의 적정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면·동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

2. 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2. 쓰레기봉투의 보관·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쓰레기봉투의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 이체기간에 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수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기타 업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수탁받은 자는 봉투판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는 배출자가 읍·면·동사무소까지 운반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보호시설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

1. 연탄제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미부과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의 금액으로 부과

3.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적용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며, 그 가격은 별표7과 같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사업장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관리자
3. 제1호 및 2호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무료로 공급되는 쓰레기봉투의 공급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 폐기물수집 · 운반 · 처리수수료(제9조 관련)

종별	부과기준	부과금액(원)	비고
냉장고	500ℓ 이상	8,000	
	300ℓ 이상	6,000	
	300ℓ 미만	5,000	
텔레비전	19인치 이상	5,000	
	19인치 미만	4,000	
세탁기		5,000	
에어콘	264m ² 형 이상	8,000	
	66m ² 형 이상	5,000	
	66m ² 형 미만	4,000	
가스오븐렌지	높이1m이상	5,000	
	높이1m미만	4,000	
탈수기		4,000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4,000	
장농	120cm이상(1쪽)	15,000	
	120cm미만(1쪽)	10,000	
서랍장	5단이상	5,000	
	4단이하	3,000	
신발장		3,000	
문갑		4,000	
화장대		4,000	
장식장		5,000	
응접세트	장의자(3인이상)	5,000	
	의자(2인이상)	3,000	

종별	부과기준	부과금액(원)	비고
침대	1인용	10,000	
	1인용 매트리스	6,000	
	2인용	15,000	
	2인용 매트리스	8,000	
캐비닛		5,000	
화일캐비닛	4단이상	4,000	
	3단이하	3,000	
양수책상		7,000	
편수책상		5,000	
피아노		15,000	
울겐		6,000	

- 주) 1.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처리비가 포함된 가격임
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수수료의 부과기준에서 솜, 스티로폼, 압축하지 않은 켄, 드럼통 등과 같이 무게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의 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은 세제곱미터(m³) 단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과정에서 성분시험, 계근 등을 실시하여 수집·운반업자가 수수료 등을 납부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수수료 등의 실비를 수집·운반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대형폐기물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별표 3]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제6조 관련)

1. 일반용·음식물쓰레기전용·가내공업용·공공용 봉투

구분	봉투용량(ℓ)	봉투규격 (가로×세로.cm)	호칭두께(mm)	
			저밀도	고밀도
음식물쓰레기 전용	3 ℓ	22×39.5	0.025	0.020
일반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5 ℓ	26×46.5	0.025	0.020
공공용 일반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10 ℓ	33×56.5	0.025	0.020
공공용 일반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20 ℓ	42×69.5	0.030	0.025
일반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30 ℓ	48×78.5	0.030	0.030
공공용 일반용	50 ℓ	56×91.5	0.040	0.035
일반용	75 ℓ	65×103.5	0.045	0.040
공공용 일반용 가내공업용	100 ℓ	71×113.5	0.050	0.045

2. 건설폐기물용 봉투

구분	봉투용량(ℓ)	봉투규격 (가로×세로.cm)	비 고
건설폐기물용	50 ℓ	56×91	PP마대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일반용 봉투 앞면문구)

점선 윗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쓰레기 봉투는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시 마 크)		
쓰레기 봉투 (㉠)		
- 일 반 용 -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배 출 자	주 소	
	성 명	
실명제에 참여합니다.		
○	파 주 시	장
품질인증표시	인영	재질분류표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공동주택용 봉투 앞면문구)

점선

윗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쓰레기 봉투는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시 마 크)

쓰레기 봉투 (ℓ)

- 공동주택용 -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으시다.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배출자	주 소	
	성 명	
실명제에 참여합니다.		

○

파 주 시

장

○

품질인증표시

인영

재질분류표시

-790-

(별표4-4)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음식물쓰레기 전용 공동주택용 봉투 앞면문구)

점선 윗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쓰레기 봉투는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시 마 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ℓ)

- 공동주택용 -

-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만 수거합니다.
-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배 출 자	주 소	
	성 명	
실명제에 참여합니다.		

○ 파 주 시 장 ○
품질인증표시 인영 재질분류표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공공용봉투 앞면문구)

점선 윗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쓰레기 봉투는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시 마 크)

쓰레기 봉투 (ㄱ)

- 공 공 용 -

○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은 데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는 파주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으신다.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배 출 자	주 소	
	성 명	
실명제에 참여합니다.		



품질인증표시

파 주 시



인영



재질분류표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사업장 가내공업용 봉투 앞면문구)

점선 윗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 마 크)

사업장쓰레기 봉투 (1)

- 가내공업용 -

- 가내공업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실명을 기재하여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 이 봉투를 사용하여 일반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배 출 자	사업장명			
	성 명		전화번호	
실명제에 참여합니다.				

○ 파 주 시 장 ○
품질인증표시 인영 제질분류표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사업장 건설폐기물용 봉투 앞면문구)

점선 윗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 마 크)

사업장쓰레기 봉투 (㉸)

- 건설폐기물용 -

- 이 봉투에는 무게 및 부피등으로 비닐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생활쓰레기, 가내공업쓰레기, 산업폐기물은 이 봉투에 버릴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배 출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실명제에 참여합니다.				

○ 파 주 시 장 ○

품질인증표시 인영 제질분류표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구분	용량별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이익	비고
일반용·음식물 쓰레기전용봉투	3 ℓ	70원	65원	5원	
	5 ℓ	100원	92원	8원	
	10 ℓ	200원	185원	15원	
	20 ℓ	400원	370원	30원	
	30 ℓ	600원	555원	45원	
	50 ℓ	1,000원	925원	75원	
	75 ℓ	1,500원	1,387원	113원	
	100 ℓ	2,000원	1,850원	150원	
건설폐기물용봉투	50 ℓ	2,500원	2,300원	195원	
가내공업용봉투	100 ℓ	3,000원	2,770원	230원	

신·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5조의2(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 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 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의 신고방법, 포 상금의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신 · 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쓰레기 봉투의 종류 · 재질등) (1)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제6조(쓰레기 봉투의 종류 · 재질등) (1)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96.11.19>			제6조(쓰레기 봉투의 종류 · 재질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사업장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쓰레기를, 사업장용 봉투에는 사업장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청색으로 한다. <개정 96.11.19>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청색으로 한다. <개정 96.11.19>			②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사업장용쓰레기 봉투의 색깔은 가내공업용은 적색, 건설폐기물용은 황색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청색으로 하며,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사용 용도별 구분 및 글씨의 색깔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공공용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박죽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 수지는 생분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고 가내공업용은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고 건설폐기물용은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신 · 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3)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3과 같다.	(4)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3과 같다.			

신 · 구문대조표

현	개 정 안
제7조(쓰레기 봉투의 제작등)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u>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시단체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한다.</u>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제6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u>별표 4-1, 별표 4-2, 별표 4-3, 별표 4-4, 별표4-5와 같다.</u>	제7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u>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파주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쓰레기실명제 기재란, 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분해성수지가 함유된 봉투는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u>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⑤제6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u>별표 4-1, 별표 4-2, 별표 4-3, 별표 4-4, 별표4-5, 별표 4-6, 별표4-7과 같다.</u>

신·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1)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는 각·읍·면·동사무소 및 일반상가 등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봉투판매인(이하 “봉투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96.11.19> (2) <99. 5. 15. 삭제> (3)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공급한다. (4)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통·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 및 리·통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5)시장은 폐기물배출자의 생활권역내의 일반상가들에서 수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쓰레기봉투 판매를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리·반장 및 부녀회장에게, 공동주택은 대표관리사무소장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으며, 제8조제1항에 의한 판매 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99. 5. 15)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 사업장쓰레기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는 일반상가등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봉투판매인(이하 “봉투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일정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신·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8조의2(쓰레기봉투의 판매업무 위탁) ①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다음 각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파주시재무회계규칙 제99조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쓰레기봉투의 적정 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면·동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 2. 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파주시설관리공단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2. 쓰레기봉투의 보관·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쓰레기봉투의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 이체기간에 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신·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5. 업무 위·수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기타 업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수탁받은 자는 봉투판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별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처 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 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대형폐기물배출자가 읍·면·동사무 소까지 운반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책정된 생활보호대상자는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98. 11. 5〉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별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처 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 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대형폐기물배출자가 읍·면·동사무 소까지 운반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책정된 생활보호대상자는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98. 11. 5〉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별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처 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 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대형폐기물배출 수수료는 배출자가 읍·면·동사무소까지 운반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 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보호시설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별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처 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 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대형폐기물배출 수수료는 배출자가 읍·면·동사무소까지 운반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 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보호시설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별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처 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 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대형폐기물배출 수수료는 배출자가 읍·면·동사무소까지 운반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 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보호시설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 가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 가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종량제봉투의 판매 가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종량제봉투의 판매 가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종량제봉투의 판매 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 며, 그 가격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 며, 그 가격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며 그 가격은 별표7과 같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며 그 가격은 별표7과 같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며 그 가격은 별표7과 같다.

용량별	판매가격	판매소공급가격	판매이익	비고
3ℓ	50	46	4	
5ℓ	80	74	6	
10ℓ	160	148	12	
20ℓ	320	296	24	
30ℓ	470	434	36	
50ℓ	780	720	60	
75ℓ	1,160	1,070	90	
100ℓ	1,500	1,380	120	

신 · 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수수료의 감면) (i)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96. 11. 19)	제14조(수수료의 감면) (i)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96. 11. 19)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업장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신설〉				2.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관리인
2. 제1호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2. 제1호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3. 제1호 및 2호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무료로 공급되는 쓰레기봉투의 공급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 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대형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수수료(제9조 관련)	[별표1]	대형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수수료(제9조 관련)	
종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냉장고	500ℓ 이상	8,000		
	300ℓ 이상	6,000		
	300ℓ 미만	5,000		
텔레비전	19인치 이상	5,000		
	19인치 미만	4,000		
세탁기		5,000		
에어콘	264㎡형이상	8,000		
	66㎡형이상	5,000		
	66㎡형미만	4,000		
가스오븐렌지	높이1m이상	5,000		
	높이1m미만	4,000		
탈수기		4,000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4,000		
장동	120cm이상(1쪽)	15,000		
	120cm미만(1쪽)	10,000		
서랍장	5단이상	5,000		
	4단이하	3,000		

신 · 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종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종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종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종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종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신발장		2,000		신발장		3,000		신발장		3,000		신발장		3,000		신발장		3,000					
문갑		3,000		문갑		3,000		문갑		4,000		문갑		4,000		문갑		4,000					
화장대		3,000		화장대		4,000		화장대		5,000		화장대		5,000		화장대		5,000					
장식장		5,000		장식장		2,000		장식장		5,000		장식장		5,000		장식장		5,000					
응접세트	장의자(3인이상)	10,000		응접세트	장의자(3인이상)	5,000		응접세트	장의자(3인이상)	5,000		응접세트	장의자(3인이상)	5,000		응접세트	장의자(3인이상)	5,000					
	의자(2인이상)	5,000			의자(2인이상)	2,000			의자(2인이상)	3,000			의자(2인이상)	3,000			의자(2인이상)	3,000					
침대	1인용	10,000		침대	1인용	10,000		침대	1인용	10,000		침대	1인용	10,000		침대	1인용	10,000					
	1인용매트리스	5,000			1인용매트리스	5,000			1인용매트리스	6,000			1인용매트리스	6,000			1인용매트리스	6,000					
	2인용	15,000			2인용	15,000			2인용	15,000			2인용	15,000			2인용	15,000					
캐비닛	2인용매트리스	8,000		캐비닛	2인용매트리스	8,000		캐비닛	2인용매트리스	8,000		캐비닛	2인용매트리스	8,000		캐비닛	2인용매트리스	8,000					
		4,000				4,000				5,000				5,000				5,000					
화일캐비닛	4단이상	3,000		화일캐비닛	4단이상	3,000		화일캐비닛	4단이상	4,000		화일캐비닛	4단이상	4,000		화일캐비닛	4단이상	4,000					
	3단이하	2,000			3단이하	2,000			3단이하	3,000			3단이하	3,000			3단이하	3,000					
양수책상		7,000		양수책상		7,000		양수책상		7,000		양수책상		7,000		양수책상		7,000					
편수책상		4,000		편수책상		4,000		편수책상		5,000		편수책상		5,000		편수책상		5,000					
피아노		15,000		피아노		15,000		피아노		15,000		피아노		15,000		피아노		15,000					
올개		4,000		올개		4,000		올개		6,000		올개		6,000		올개		6,000					
주) 1.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처리비가 포함된 가격임 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수수료의 부과기준에서 솜, 스티로폼, 압축하지 않은 캔, 드럼통 등과 같이 무게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의 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은 세제곱미터(m³) 단위로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3.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과정에서 성분시험, 계근 등을 실시하여 수집 · 운반업자가 수수료 등을 납부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수수료 등의 실비를 수집 · 운반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대형폐기물종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주) 1.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처리비가 포함된 가격임 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수수료의 부과기준에서 솜, 스티로폼, 압축하지 않은 캔, 드럼통 등과 같이 무게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의 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은 세제곱미터(m³) 단위로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3.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과정에서 성분시험, 계근 등을 실시하여 수집 · 운반업자가 수수료 등을 납부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수수료 등의 실비를 수집 · 운반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대형폐기물종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주) 1.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처리비가 포함된 가격임 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수수료의 부과기준에서 솜, 스티로폼, 압축하지 않은 캔, 드럼통 등과 같이 무게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의 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은 세제곱미터(m³) 단위로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3.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과정에서 성분시험, 계근 등을 실시하여 수집 · 운반업자가 수수료 등을 납부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수수료 등의 실비를 수집 · 운반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대형폐기물종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주) 1.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처리비가 포함된 가격임 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수수료의 부과기준에서 솜, 스티로폼, 압축하지 않은 캔, 드럼통 등과 같이 무게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의 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은 세제곱미터(m³) 단위로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3.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과정에서 성분시험, 계근 등을 실시하여 수집 · 운반업자가 수수료 등을 납부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수수료 등의 실비를 수집 · 운반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대형폐기물종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주) 1.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처리비가 포함된 가격임 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수수료의 부과기준에서 솜, 스티로폼, 압축하지 않은 캔, 드럼통 등과 같이 무게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의 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은 세제곱미터(m³) 단위로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3.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과정에서 성분시험, 계근 등을 실시하여 수집 · 운반업자가 수수료 등을 납부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수수료 등의 실비를 수집 · 운반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대형폐기물종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주) 1.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처리비가 포함된 가격임 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수수료의 부과기준에서 솜, 스티로폼, 압축하지 않은 캔, 드럼통 등과 같이 무게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의 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은 세제곱미터(m³) 단위로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3.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과정에서 성분시험, 계근 등을 실시하여 수집 · 운반업자가 수수료 등을 납부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수수료 등의 실비를 수집 · 운반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대형폐기물종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신 · 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제6조 관련)				(별표 3)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제6조 관련)																																																																																																																																																																																																																																																																																																																																																																																																																																																																																																																																																																																																																																																																																																																																																																																																																																																																																																																																																																																																																																																																																																																																																																																																																																																																																																																																																																																																																																																																																																																																																																																																																																																																																																																																																																																																																																																																																																																																																																																																																																																																																																																																															
												1. 일반용·음식물쓰레기전용·가내공업용·공공용 봉투																																																																																																																																																																																																																																																																																																																																																																																																																																																																																																																																																																																																																																																																																																																																																																																																																																																																																																																																																																																																																																																																																																																																																																																																																																																																																																																																																																																																																																																																																																																																																																																																																																																																																																																																																																																																																																																																																																																																																																																																																																																																																																																																															
구	분	봉투용량(ℓ)	봉투규격 (가로×세로, cm)	호칭두께(mm)		용	용	용	용	용	용	용	용	용	용	용	용	용																																																																																																																																																																																																																																																																																																																																																																																																																																																																																																																																																																																																																																																																																																																																																																																																																																																																																																																																																																																																																																																																																																																																																																																																																																																																																																																																																																																																																																																																																																																																																																																																																																																																																																																																																																																																																																																																																																																																																																																																																																																																																																																																									
음식물쓰레기전용	반	3ℓ	22×39.5	저밀도	고밀도														음식물쓰레기전용	반	5ℓ	26×46.5	음식물쓰레기전용	공	10ℓ	33×56.5	음식물쓰레기전용	공	20ℓ	42×69.5	음식물쓰레기전용	일	반	30ℓ	48×78.5	음식물쓰레기전용	공	50ℓ	56×91.5	음식물쓰레기전용	일	반	75ℓ	65×103.5	음식물쓰레기전용	공	100ℓ	71×113.5	음식물쓰레기전용	가	내	공	업	용																																																																																																																																																																																																																																																																																																																																																																																																																																																																																																																																																																																																																																																																																																																																																																																																																																																																																																																																																																																																																																																																																																																																																																																																																																																																																																																																																																																																																																																																																																																																																																																																																																																																																																																																																																																																																																																																																																																																																																																																																																																																																																					

신 · 구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별표4-1)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일반용봉투 앞면문구)

점선 외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 마 크)
쓰레기봉투 (ℓ)
- 일 반 용 -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으시다.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배출자	주소	성명
	실명제에 참여합니다.	

○ 파 주 시 ○

품질인증표시

재질분류표시

(별표4-1)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일반용봉투 앞면문구)

점선 외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쓰레기 봉투는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시 마 크)
쓰레기봉투 (ℓ)
- 일 반 용 -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으시다.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배출자	주소	성명
	실명제에 참여합니다.	

○ 파 주 시 ○ 장 ○

품질인증표시

인영 재질분류표시

신 · 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4-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공동주택용봉투 앞면문구)		(별표4-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공동주택용봉투 앞면문구)			
점선 외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점선 외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점선 외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점선 외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쓰레기 봉투는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시 마 크)		(시 마 크)		(시 마 크)		(시 마 크)			
쓰레기 봉투 (0)		쓰레기 봉투 (0)		쓰레기 봉투 (0)		쓰레기 봉투 (0)			
- 공동주택용 -		- 공동주택용 -		- 공동주택용 -		- 공동주택용 -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쓰레기실명세 기재사항)		(쓰레기실명세 기재사항)		(쓰레기실명세 기재사항)		(쓰레기실명세 기재사항)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배출자		주소		배출자		주소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실명제에 참여합니다.		실명제에 참여합니다.		실명제에 참여합니다.		실명제에 참여합니다.			
○ 과 주 시 ○		○ 과 주 시 ○		○ 과 주 시 ○		○ 과 주 시 ○			
품질인증표시		재질분류표시		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표시			
								인명 재질분류표시	

신 · 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4-3)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음식물쓰레기전용 일반용봉투 앞면문구)		(별표4-3)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음식물쓰레기전용 일반용봉투 앞면문구)			
점선 왼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점선 왼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점선 왼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점선 왼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 마 크)		(시 마 크)		(시 마 크)		(시 마 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ℓ)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ℓ)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ℓ)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ℓ)			
- 일 반 용 -		- 일 반 용 -		- 일 반 용 -		- 일 반 용 -			
○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만 수거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만 수거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만 수거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만 수거합니다.			
○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 음식물쓰레기는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 음식물쓰레기는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 음식물쓰레기는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배출자		주소		배출자		주소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실명제에 참여합니다.		실명제에 참여합니다.		실명제에 참여합니다.		실명제에 참여합니다.			
○ 파 주 시 장		○ 파 주 시 장		○ 파 주 시 장		○ 파 주 시 장			
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표시			
재질분류표시		재질분류표시		재질분류표시		재질분류표시			

신 · 구문대조표

현행

행

개

정

안

(별표4-4)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음식물쓰레기전용 공동주택용봉투 앞면문구)

점선 윗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 마 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ℓ)
- 공동주택용 -

배출자

주 소

성 명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실명제에 참여합니다.

○ 파 주 시 ○

품질인증표시

재질분류표시

(별표4-4)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음식물쓰레기전용 공동주택용봉투 앞면문구)

점선 윗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쓰레기 봉투는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시 마 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ℓ)
- 공동주택용 -

배출자

주 소

성 명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실명제에 참여합니다.

○ 파 주 시 ○

품질인증표시

인영 재질분류표시

신 · 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4-5)	(별표4-5)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공공응봉투 앞면문구)		
점선 외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점선 외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점선 외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쓰레기 봉투는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시 마 크) 쓰 레 기 봉 투 (ℓ) - 공 공 용 -		
() 이 봉투는 가로 및 끝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는 가로 및 끝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는 가로 및 끝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는 파주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파주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봉투는 파주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배 출 자	주 소	주 소		
성 명	성 명	성 명		
실명제에 참여합니다.	실명제에 참여합니다.	실명제에 참여합니다.		
○ 파 주 시 ○	○ 파 주 시 ○	○ 파 주 시 ○		
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표시		
		인명 재질분류표시		

신 · 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별표4-6)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사업장 가내공업봉투 앞면문구) 점선 왼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 마 크) 사업장쓰레기봉투 (㉠) - 가내공업용 - ○ 가내공업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실명을 기재하여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 이 봉투를 사용하여 일반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으십시오.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rowspan="2" style="width: 30%;">배 출 자</td> <td style="width: 30%;">사업장명</td> <td colspan="2" style="width: 40%;"></td> </tr> <tr> <td>성 명</td> <td></td> <td>전화번호</td> </tr> </table> 실명제에 참여합니다. ○ 파 주 시 장 품질인증표시 ○ 인 영 재질분류표시			배 출 자	사업장명			성 명		전화번호
배 출 자	사업장명										
	성 명		전화번호								

신 · 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별표4-7)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사업장 건설폐기물용봉투 앞면문구)

점선 외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 마 크)

사업장쓰레기봉투 (ℓ)

- 건설폐기물용 -

- 이 봉투에는 무게 및 부피등으로 비닐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생활쓰레기, 가내공업쓰레기, 산업폐기물은 이 봉투에 버릴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으십시오.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배출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실명제에 참여합니다.

○ 파 주 시 장 ○

품질인증표시

인명 재질분류표시

신·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별표7)	쓰레기증량제 규격봉투 가격				
		구분	용량별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이익
			3ℓ	70원	65원	5원
			5ℓ	100원	92원	8원
			10ℓ	200원	185원	15원
			20ℓ	400원	370원	30원
			30ℓ	600원	555원	45원
			50ℓ	1,000원	925원	75원
			75ℓ	1,500원	1,387원	113원
			100ℓ	2,000원	1,850원	150원
		건설폐기물용봉투	50ℓ	2,500원	2,300원	195원
		가내공업용봉투	100ℓ	3,000원	2,770원	230원
		비고				